

# 『내일키움통장』 특약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8. 2. 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b>『내일키움통장』 특약</b>	<b>『내일키움통장』 특약</b>	
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지방자치단체, 중앙자활센터,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(이하 중앙자활센터와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를 통칭하여 “자활센터”라 함)</u> 및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예금과목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4 조 약정기간</b>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</u> 합니다.</p> <p><b>제 5 조 최초가입금액</b>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,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(추후 변경 불가), <u>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</u> 신규합니다.</p> <p><b>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</b>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(5만원, 10만원 또는 20만원)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자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내일근로장려금(이하 통칭하여 “적립금”이라 함)을</u></p>	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(좌동)</p> <p><b>제 2 조 가입대상</b>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중앙자활센터</u> 및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p> <p><b>제 3 조 예금과목</b> (좌동)</p> <p><b>제 4 조 약정기간</b>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</u> 합니다. (단, <u>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</u>)</p> <p><b>제 5 조 최초가입금액</b>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,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(추후 변경 불가), <u>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</u> 신규합니다.</p> <p><b>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</b>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(5만원, 10만원 또는 20만원)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내일근로장려금(이하 통칭하여 “적립금”이라 함)을</u> 입금 할 수</p>	<p>‘2018자활사업안내(II)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’ (이하 ‘운영지침’ 이라 함) 변경 내용 반영</p> <p>정부지원금 가입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 대상 중 지방자치단체,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등 문구 삭제 (운영지침 44p, 64 p)</p> <p>중앙자활센터로 변경,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,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(운영지침 64 p)</p> <p>(2조 변경 반영) 중앙자활센터로 변경,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</p> <p>(2조 변경 반영) 중앙자활센터로 변경,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</p>

<p>입금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b>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</b>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는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<u>자활센터에</u> 매월 통보하고,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.</p> <p>② (내용생략)</p> <p>③ <u>지역자활센터가 적립하는 내일키움수익금은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합니다.</u></p>	<p>있습니다.</p> <p><b>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</b> (좌동)</p> <p><b>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</b>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는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<u>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</u> 매월 통보하고,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<u>중앙자활센터는</u>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③ <u>중앙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개설 후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하고, 지역자활센터는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적립합니다.</u></p>	<p>(업무절차 변경 반영) 자활센터를 ‘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’ 로 문구 변경 및 적립업무기관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적용</p> <p>(2조변경반영 및 업무처리저차 반영) 중앙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통장의 개설 및 해지 관리하고, 적립은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것으로 변경</p>
<p><b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10 조 우대금리</b> (내용생략)</p>	<p><b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</b> (좌동)</p> <p><b>제 10 조 우대금리</b> (좌동)</p>	
<p><b>제 11 조 해지방법</b></p> <p>① 고객은 <u>지방자치단체에</u>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“운영 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<u>지방자치단체의 내일근로장려금,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,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월 5일(승인 통보일 전월 21일~당월 3일인 경우)과 매월 20일(승인 통보일 당월 6일~당월 18일인 경우)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u> <u>단,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, 내일키움장려금 해지 당일 및 전 영업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지 승인이 불가</u></p>	<p><b>제 11 조 해지방법</b></p> <p>① 고객은 ‘<u>운영지침</u>’에 명시한 기관에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<u>중앙자활센터가</u> “운영 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<u>적립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“운영지침” 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.</u></p>	<p>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‘운영 지침’에 명시한 기관으로 변경 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해지 승인 통보기관 변경</p> <p>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해지요청기관 변경. 상세 해지방법은 “운영지침”의 요건에 따름으로 변경</p>

<p><u>능합니다.</u></p> <p><b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</b>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적립금은 “운영 지 침”에 따라 <u>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고객에게 지급됩니다</p> <p>② 고객은 적립금을 “운영 지침”에서 명시한 용 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<u>지방자 치단체에</u>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 야 합니다.</p> <p><b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15 조 부가서비스</b> (내용생략)</p> <p><b>제 16 조 기타</b> (내용생략)</p>	<p><b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</b> (좌동)</p> <p><b>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</b>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적립금은 “운영 지 침”에 따라 <u>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, 중앙자 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</u> 고객에게 지급됩니다</p> <p>② 고객은 적립금을 “운영 지침”에서 명시한 용 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‘<u>운영 지침</u>’에 <u>명시한 기관에</u>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</p> <p><b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</b> (좌동)</p> <p><b>제 15 조 부가서비스</b> (좌동)</p> <p><b>제 16 조 기타</b> (좌동)</p>	<p>지급 조건 절차 변경 반영</p> <p>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'운영지침'에 명시한 기관으 로 변경</p>
---	--	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